

코러스암치료보험
보통보험약관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보험계약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이 날을 "보험계약일"로 보며,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일 다음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③ 계약일 이후에 제적, 이혼 등에 의하여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6(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5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새로 배우자로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 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의 2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의 3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하며,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3대암 분류표” 참조) 및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1 “여성특정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 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 【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암치료자금,암간병자금,암수술급여금,암입원급여금,특정암사망보험금 및 일반암사망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암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이외의 원인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이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암치료자금 또는 암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 또다시 암치료자금 또는 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5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6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의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8호(만기환급부에 한함)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동향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7조의 2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제2조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자금 지급(단, 피보험자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특정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암간병자금을 12회 확정 지급(단,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및 별표 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특정암 사망보험금 지급

6.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암 사망보험금 지급

7.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특정암 포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급여금 지급

8. 2종(만기축하금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는 주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가 동시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 만기축하금 지급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또는 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암

진단확정일로 하여 특정암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암사망보험금 및 암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⑦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⑨ 제1항 제4호의 경우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정은 그 입원이 이루어진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입원중의 병명 변경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의 입원 사유에 의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고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⑩ 제1항 제2호의 암간병자금 보증지급분에 대하여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제1항의 경우 일반암과 특정암이 동시에 확정되거나 특정암의 진단이 먼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정암치료자금 및 간병자금을 지급하며, 일반암 진단확정으로 일반암치료자금 또는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해당급여금의 차액을 추가지급합니다.

제10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내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4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회사는 보험료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9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5조(계약의 효력), 제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암진단서(암진단 확정의 경우)
4. 수술증명서(수술의 경우)
5. 보험증권
6.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7.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1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만기축하금형의 경우 만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해약환급금과 만기축하금형의 경우 만기축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암사망보험금, 일반암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보험종목

2.보험가입금액

3.계약자 또는 수익자

4.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후의 주피보험자와 변경전의 주피보험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개인계약에서 부부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종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5조(계약의 효력) 및 제8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부부계약으로의 변경일로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 【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5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보험금과 각종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 표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40세 전기월납 기준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인계약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1,116	3,348	5,580	11,160				
	해약환급금 0	233	867	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1,368	4,104	6,840	13,680	20,520			
	해약환급금 0	874	2,213	3,423	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1,704	5,112	8,520	17,040	25,560	34,080		
	해약환급금 0	1,651	3,870	7,643	7,853	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2,088	6,264	10,440	20,880	31,320	41,760	52,200	
	해약환급금 0	2,532	5,752	12,438	16,772	15,193	0		
부부계약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2,496	7,488	12,480	24,960	37,440	49,920	62,400	74,880
	해약환급금 0	3,442	7,703	17,417	26,030	30,958	26,637	0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1,896	5,688	9,480	18,960				
	해약환급금 0	223	1,208	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2,268	6,804	11,340	22,680	34,020			
	해약환급금 0	1,128	3,108	4,719	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2,760	8,280	13,800	27,600	41,400	55,200		
	해약환급금 0	2,227	5,452	10,594	10,632	0			
부부계약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3,360	10,080	16,800	33,600	50,400	67,200	84,000	
	해약환급금 0	3,549	8,280	17,710	23,595	21,363	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4,044	12,132	20,220	40,440	60,660	80,880	101,100	121,320
	해약환급금 0	5,009	11,422	25,645	38,108	45,462	39,001	0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2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40세 전기월납 기준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인계약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5,136	15,408	25,680	51,360				
	해약환급금 2,168	11,187	21,653	51,36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3,624	10,872	18,120	36,240	54,360			
	해약환급금 1,216	7,200	14,088	32,677	54,36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3,276	9,828	16,380	32,760	49,140	65,520		
	해약환급금 875	6,182	12,292	28,356	46,358	65,52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3,216	9,648	16,080	32,160	48,240	64,320	80,400	
	해약환급금 708	5,910	11,920	27,526	44,805	62,864	80,400		
부부계약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3,252	9,756	16,260	32,520	48,780	65,040	81,300	97,560
	해약환급금 576	5,857	11,994	27,813	45,321	63,719	81,794	97,560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8,676	26,028	43,380	86,760				
	해약환급금 3,621	18,689	36,245	86,76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5,916	17,748	29,580	59,160	88,740			
	해약환급금 1,897	11,376	22,328	52,156	88,74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5,196	15,588	25,980	51,960	77,940	103,920		
	해약환급금 1,279	9,294	18,535	42,770	70,796	103,920			
부부계약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5,028	15,084	25,140	50,280	75,420	100,560	125,700	
	해약환급금 980	8,628	17,465	40,112	65,411	93,432	125,70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5,076	15,228	25,380	50,760	76,140	101,520	126,900	152,280
	해약환급금 736	8,475	17,457	40,185	65,194	91,992	119,726	152,280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보험가입금액:10만원, 여자40세 전기월납 기준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인계약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3,312 0	5,520 299	11,040 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3,492 82	5,820 772	11,640 1,184	17,460 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3,780 331	6,300 1,294	12,600 2,505	18,900 2,443	25,200 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4,140 611	6,900 1,890	13,800 4,017	20,700 5,236	27,600 4,671	34,500 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4,500 916	7,500 2,530	15,000 5,640	22,500 8,234	30,000 9,681	37,500 8,060	45,000 0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7,056 279	11,760 1,506	23,520 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8,388 1,329	13,980 3,723	27,960 5,543	41,940 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9,900 2,483	16,500 6,176	33,000 11,716	49,500 11,315	66,000 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11,556 3,683	19,260 8,748	38,520 18,216	57,780 23,273	77,040 20,133	96,300 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13,212 4,839	22,020 11,241	44,040 24,525	66,060 34,878	88,080 39,663	110,100 32,306	132,120 0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2종)

보험가입금액:10만원, 여자40세 전기월납 기준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인계약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5,100 2,015	15,300 10,722	25,500 20,964	51,000 51,00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3,132 859	9,396 5,576	15,660 11,109	31,320 26,628	46,980 46,98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2,496 429	7,488 3,857	12,480 7,874	24,960 18,680	37,440 32,321	49,920 49,92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2,232 237	6,696 3,120	11,160 6,503	22,320 15,289	33,480 26,033	44,640 39,397	55,800 55,80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2,100 75	6,300 2,695	10,500 5,784	21,000 13,582	31,500 22,891	42,000 34,156	52,500 47,376	63,000 63,000
	1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9,864 4,035	29,592 20,920	49,320 40,720	98,640 98,640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6,672 2,064	20,016 12,431	33,360 24,466	66,720 57,442	100,080 100,080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5,652 1,294	16,956 9,537	28,260 19,052	56,520 43,680	84,780 72,852	113,040 113,040		
	25년 만기	납입보험료 0	5,232 823	15,696 8,174	26,160 16,639	52,320 37,568	78,480 60,442	104,640 88,147	130,800 130,800	
	30년 만기	납입보험료 0	5,112 513	15,336 7,578	25,560 15,730	51,120 35,257	76,680 55,389	102,240 76,938	127,800 103,368	153,360 153,360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기준: 1구좌(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명 청	지 급 사 유	지급액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부부 계약)
암치료 자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0만원	2,0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1,0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별표4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200만원
	단, 암치료자금은 피보험자별로 특정암을 포함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간병 자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상피내암 제외)	특정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매월 200만원	매월 2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상피내암 제외)	일반암 (특정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매월 100만원	매월 100만원
	단, 암간병자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상피내암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암수술 급여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특정암 수술 1회당 400만원	4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일반암(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200만원	2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상피내암 수술 1회당 50만원	5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암(특정암 포함): 10만원 -상피내암: 2만원	
특정암 사망보 험금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2000만원
일반암 사망보 험금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1000만원
일반사 망보 험금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특정암 포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2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급 액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부부 계약)
암치료 자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0만원	2,0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1,0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별표4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200만원
단, 암치료자금은 피보험자별로 특정암을 포함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간병 자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상피내암 제외)	특정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매월 200만원	매월 2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상피내암 제외)	일반암 (특정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 일에 12회 확정 지급 매월 100만원	매월 100만원
	단, 암간병자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상피내암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암수술 급여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특정암 수술 1회당 400만원	4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일반암(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200만원	2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상피내암 수술 1회당 50만원	50만원
암입원 급여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암(특정암 포함): 10만원 -상피내암: 2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2000만원
일반암 사망보 험금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1000만원
일반사 망급여 금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특정암 포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만원 +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200만원
만기축 하금	-개인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부부형: 주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가 동시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 00 - C 14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 15 - C 26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C 30 - C 39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 40 - C 41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 43 - C 4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 45 - C 49
유방의 악성 신생물	C 50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 51 - C 5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 60 - C 63
요로의 악성 신생물	C 64 - C 68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C 69 - C 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 73 - C 75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C 76 - C 8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 81 - C 96
독립된(원발성)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C 97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위의 악성 신생물	C 1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 22
담낭의 악성 신생물	C 23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 신생물	C 24
기관의 악성 신생물	C 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 34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1】

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 신생물	C 50
자궁경의 악성 신생물	C 53
자궁체의 악성 신생물	C 54
상세불명 자궁 부위의 악성 신생물	C 55
난소의 악성 신생물	C 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 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 58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상피내의 흑색종	D03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 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p>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제2급	<p>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의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4급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 분류해설

1.“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 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손목이하,팔꿈치이하,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발목이하,무릎이하,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6]

제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꾀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운수 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 개입 및 전쟁 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파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개입”중 처형(Y35.5)